장기요양기관 공단 홈페이지 정보게시 안내

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에 따라 수급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(과태료)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특히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.

【 게시 방법 】

신설기관·홈페이지 미가입 기관	홈페이지 가입 후 정보 미게시·미변경 기관
① 홈페이지 가입	① (미게시 항목) 해당정보 반드시 입력 필요
② 급여종류별 정보 입력 필요	② (미변경 항목) 수시 업데이트

- ▶ 정보게시는 <u>급여종류별 입력</u>이 원칙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실과 치매전담실기형, 니형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, 주·이간보호의 경우에도 일반실과 주·이간보호내치매전담실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현원 및 프로그램 정보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입력하여야 하며, 최소한 <u>3개월(현원)</u> <u>·6개월(프로그램 정보)</u> 이내 수정하셔야 합니다.
- ▶ 기본정보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에 기재사항 없을 시 공란이 아닌 '없음'으로 입력
- ▶ 입소(이용)정원이 '0명'인 경우 현재입소(이용)현원에 '0명' 입력해야 게시여부 반영
- ※「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매뉴얼」확인 경로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 -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 ··· 게시번호 61341번

2025. 6.

국민건강보험공단